

제 43 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축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3기(2018년 1월 1일~ 2018년12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09:00
2. 장 소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대회의실
3.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회의목적사항

제 1 호 의안 : 제43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1주당 50원)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이사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비 고
강 승 엽	85.09.09	스톨베르그&삼일(주)이사	-	특수관계인	사내이사

제 4 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5.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증권예탁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대리인 또는 증권회사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 식 회 사 삼 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대 표 이 사 이 정 식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 식 회 사 국 민 은 행
은 행 장 허 인

●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삭제)	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신설)	제9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② 생략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생략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현행과 동일	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제12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신고) ①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 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삭제)	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② 생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의 삭제에 따라 문구정비
제17조(소집시기)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일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제17조(소집시기) ① 현행과 동일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자구 수정

<p>제4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p>	<p>제4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개정 외부감사법 반영</p>
<p>(신설)</p>	<p>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6조, 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전자증권법 시행 반영</p>